 MASAN UNIVERSITY SINCE 1956 마산대학교	<h1 style="margin: 0;">평생교육원 수강료 책정 및 반환 지침</h1>	규정번호	4-1-00-01
		제정일자	2011. 7. 1.
		개정일자	2019. 1. 21.
		페이지번호	1 / 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마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의 수강료 책정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료의 정의) 본 교육원의 수강료는 평생교육원 규정 제 1장 총칙, 제4조(교육과정)에 명시된 지역주민을 위한 일반과정, 재학생을 위한 특별과정, 국제어학센터 토익과정, 스포츠아카데미 레포트과정의 수강료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일반과정 수강료 : 지자체 위탁 지역주민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시위탁 보조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책정한 금액
2. 특별과정 수강료 :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집체교육 또는 재학생이 필요한 자격과정의 재학생 할인이 적용된 납부금액
3. 국제어학센터 수강료 : 국제어학센터에서 운영하는 토익과정의 일반토익, 집중토익 및 각종 특강의 재학생 및 일반인 납부금액
4. 스포츠아카데미 수강료 : 별표1에서 정함 <개정 2014.9.25., 2015.8.31.>
5. 기타과정 수강료 : 외부기관 위탁 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정을 받아 개설되는 교육프로그램 및 위 각호에 명시되지 않은 재학생 및 일반인 대상 비정규 교육과정 전체의 별도 책정된 본인부담금

제3조(수강료 책정) 본 교육원에서 운영되는 강좌의 수강료는 다음 각호에 의거, 책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일반과정 수강료 : 평생교육원 규정 제2장 수강과 등록, 제9조(수강료) ②항에 의거, 매 학기 일반과정 프로그램별 수강료를 원장이 별도 책정하여 운영한다. 단, 수강료 변경에 따른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은 수강료 책정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한다.
2. 특별과정 수강료 :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집체교육 또는 재학생이 필요한 자격과정의 경우, 재학생 할인을 적용하여 원장이 일반과정 수강료와 함께 별도 책정하여 운영한다. 단, 수강료 변경에 따른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은 수강료 책정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한다.
3. 국제어학센터 수강료 : 국제어학센터에서 운영되는 일반토익, 집중토익의 경우 별도 총장에게 보고, 승인된 수강료 책정에 따른다. 단 그 외 수시 발생하는 토익특강의 경우 원장이 판단하여 별도 수강료를 책정·운영 할 수 있다.
4. 스포츠아카데미 수강료 : 스포츠아카데미의 수강료는 스포츠아카데미 수강료 책정표에 따른다. 단 책정표에 명시되지 않은 레포트 특강의 경우 개설 2주전 원장은 총장에게 수강료 및 운영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승인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MASAN UNIVERSITY SINCE 1966 마산대학교	<h2 style="margin: 0;">평생교육원 수강료 책정 및 반환 지침</h2>	규정번호	4-1-00-01
		제정일자	2011. 7. 1.
		개정일자	2019. 1. 21.
		페이지번호	2 / 8

5. 기타과정 수강료 : 외부기관 위탁 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정을 받아 개설되는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지침 또는 계획서에 의거, 수강료를 책정·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침 또는 계획서에 관련사항이 없는 경우 원장이 별도 책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할 수 있다.

6. 위 각호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학생 및 일반인 대상 비정규 교육과정의 경우,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수강료를 책정·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수강료감면) 본 교육원에서 개설 및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지자체 위탁 지역주민 평생교육과정 중 지자체 위탁 지역주민 평생교육과정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3조1호의 의거 당해학기 책정된 수강료 중 시·군 보조금을 제외한 본인납부 금액의 반액 감면
2. 국가유공자 및 가족: 제3조1호에 의거 당해학기 책정된 수강료 중 시·군 보조금을 제외한 본인납부 금액의 반액 감면

[본조신설 2014. 9.25.]


제4조(수강신청 연기) ① 본 교육원 스포츠아카데미 수강생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3개월 등록회원에 한하여 연기신청 후 남은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일반과정, 특별과정, 국제어학센터 토익과정, 기타과정은 연기 불가능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연기는 최장 3개월 까지로 하며, 이후 (별지-3)에 의거, 환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연기 후 이용기간은 수강생의 연기 신청일로부터 총이용기간을 제외한 남은기간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정의 양식을 작성 후 연기할 수 있다.

1. 스포츠아카데미 이용이 불가능한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업무상 출장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외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수강료 반환) 수강료의 반환은 수강생이 반환을 요청한 일자를 기준으로 환산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으로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가족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1. 일반과정 : 수강료 반환은 (별지-2) 평생교육원 수강료 반환기준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2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2. 특별과정 : 특별과정 수강료 반환은 일반과정 수강료 반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국제어학센터 : 국제어학센터 수강료 반환은 일반과정 수강료 반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MASAN UNIVERSITY SINCE 1956 마산대학교	<h2 style="margin: 0;">평생교육원 수강료 책정 및 반환 지침</h2>	규정번호	4-1-00-01
		제정일자	2011. 7. 1.
		개정일자	2019. 1. 21.
		페이지번호	3 / 8

4. 스포츠아카데미 : 스포츠아카데미의 수강료 반환은 별표3 스포츠아카데미 수강료 반환 기준과 공정거래위원회 체육시설 및 레저용역업 반환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5. 기타과정 : 외부기관 위탁 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정을 받아 개설되는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지침에 의거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지침이 없을 경우 일반과정 반환기준에 따른다.
6. 위 각호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수강료 반환은 통상관례에 따라 원장이 별도 책정하고 총장의 승인 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변동 사항 이외에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 전 개설된 교육과정은 종전과 같은 수강료를 수납하며, 이 개정규정 시행 후 환불신청자는 변경된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 제3조의2는 2014학년도 2학기 지자체 위탁 지역주민 평생교육과정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지침 시행 전 개설된 교육과정 환불신청자는 종전지침에 따라 환불한다.


부칙(2015.8.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지침 시행 전 스포츠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등록한 회원의 경우 종전 지침에 따라 수강 종료시까지 이용하기로 한다.


부칙(2017.8.21.)

이 지침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MASAN UNIVERSITY SINCE 1956 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책정 및 반환 지침	규정번호	4-1-00-01
		제정일자	2011. 7. 1.
		개정일자	2019. 1. 21.
		페이지번호	4 / 8

부칙(2019.1.21.)

이 지침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수강료 반환부터 적용한다.


 MASAN UNIVERSITY SINCE 1956 마산대학교	<h1>평생교육원 수강료 책정 및 반환 지침</h1>	규정번호	4-1-00-01
		제정일자	2011. 7. 1.
		개정일자	2019. 1. 21.
		페이지번호	5 / 8

[별표1] <개정 2014.9.25., 2015.8.31.>

스포츠아카데미 수강료 책정표 및 수강료 할인 책정기준

1. 수강료 책정표


프로그램	대상	1개월	2개월	3개월	비고
1. 수 영	1.1. 일반인	60,000	110,000	150,000	※ 매월초 시작
	1.2. 산학협력(강습 및 자유)	50,000	90,000	120,000	
	1.3. 죽암마을(강습 및 자유)	42,000	80,000	105,000	
	1.4. 초, 중, 고학생	40,000	70,000	100,000	
	1.5. 교직원가족(강습 및 자유)	30,000	55,000	75,000	
	1.6. 재학생(강습 및 자유)	30,000	55,000	75,000	
	1.7. 재학생단체(강습 및 자유)	25,000	50,000	70,000	
	1.8. 마산대학교직원	무 료			
2. 헬 스	2.1. 일반인	40,000	-	100,000	※ 등록일 시작
	2.2. 산학협력	30,000	-	80,000	
	2.3. 초, 중, 고학생	30,000	-	70,000	
	2.4. 재학생	30,000	-	60,000	
	2.5. 죽암마을	28,000	-	70,000	
	2.6. 교직원가족	20,000	-	50,000	
	2.7. 단체	20,000	-	50,000	
	2.8. 마산대학교직원	무 료			
3. 골 프	3.1. 일반인	100,000	-	250,000	※ 매월초 시작
	3.2. 교직원	50,000	-	-	
	3.3. 재학생	50,000	-	-	

 MASAN UNIVERSITY SINCE 1965 마산대학교	<h1 style="margin: 0;">평생교육원 수강료 책정 및 반환 지침</h1>	규정번호	4-1-00-01
		제정일자	2011. 7. 1.
		개정일자	2019. 1. 21.
		페이지번호	6 / 8

2. 수강료 할인 책정기준

아래의 각 호 대상자에 한하여 스포츠아카데미 수강료 할인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교직원으로 수강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7.8.21.>
 - ㉠ 전임교원, 초빙교원 및 특임교원
 - ㉡ 직원(일반직, 기술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촉탁직) 및 조교
 - ㉢ 삭제
 - ㉣ 삭제
 - ㉤ 스포츠아카데미 시간제 근로자
 - ㉥ 산학협력단 직원(계약직 포함) 및 학교기업 직원(계약직 포함)
 - ㉦ ㉡와 ㉥에 해당되는 자는 수영과 헬스 프로그램에 한하여 교직원 수강료를 적용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학생 수강료를 적용한다.
 - ㉠ 마산대학교 재학생(휴학생제외)
 - ㉡ 본대학내 문화교육원 직원(대학실험, 대학식당, 사랑방레스토랑 등)
 - ㉢ ㉡에 해당되는 자는 수영과 헬스 프로그램에 한하여 재학생 수강료를 적용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교직원가족 수강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7.8.21.>
 - ㉠ 전임교원, 초빙교원 및 특임교원의 직계가족
 - ㉡ 직원(일반직, 기술직, 무기계약직)의 직계가족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초·중·고학생 수강료를 적용한다.
 - ㉠ 8세 ~ 19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 ㉡ 마산제일고등학교 교직원
 - ㉢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교직원
 - ㉣ 마산제일여자중학교 교직원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죽암마을 수강료를 적용, 중복할인을 하지 않는다.
 -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산 1~산36
 -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708-938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산학협력업체 수강료를 적용한다.
 - ㉠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직원(입주확인서, 소속확인서)
 - ㉡ 뉴아라고속관광 직원
 - ㉢ 마산밸리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입주확인서, 소속확인서)
 - ㉣ 마산교도소 직원
 - ㉤ 39사단 소속

 MASAN UNIVERSITY SINCE 1956 마산대학교	<h1>평생교육원 수강료 책정 및 반환 지침</h1>	규정번호	4-1-00-01
		제정일자	2011. 7. 1.
		개정일자	2019. 1. 21.
		페이지번호	7 / 8

[별표2] <개정 2014.9.25.>

평생교육원 수강료 반환표


1. 교육기간 1개월 이내 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후 반환기준

구분	강좌개설 전	강좌개설 후 1/3경과전	강좌개설 후 1/2경과전	강좌개설 후 1/2경과후
일반과정, 특별과정, 국제어학 센터	수강료 전액 환불	납부한 수강료의 2/3 환불	납부한 수강료의 1/2 환불	미환급

2. 교육기간 1개월 이상 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후 반환기준

구분	강좌개설 전	강좌개설 후 2/3 경과 전	강좌개설 후 2/3 경과 후
일반과정, 특별과정, 국제어학 센터	수강료 전액 환불	환불금액 =본인납부수강료-(교육시간단가 × 교육 경과시간(환불신청일)) ※ 교육시간단가: 납부수강료/총시수	환불신청 불가

※ 그 외 사항 또는 사업주 귀책사유 환불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제2항에 의거, 환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MASAN UNIVERSITY SINCE 1956 마산대학교	<h2 style="margin: 0;">평생교육원 수강료 책정 및 반환 지침</h2>	규정번호	4-1-00-01
		제정일자	2011. 7. 1.
		개정일자	2019. 1. 21.
		페이지번호	8 / 8

[별표3] <개정 2014.9.25., 2015.8.31.,2019.1.21.>

스포츠아카데미 수강료 반환표

구분	반환사유 발 생 일	반환금액
1. 법 2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경과한 기간(일수)}}{\text{계약상 이용기간(일수)})] - \text{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 - \text{위약금}$
2. 법 2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경과한 기간(일수)}}{\text{계약상 이용기간(일수)})] + \text{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 + \text{위약금}$

※ 수강료 환불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의2(이용료의 반환)에 따라 환불한다.